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시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는 서식 중 I-864라는 서식이 있다. I-864, Affidavit of Support는 재정 보증서로서 가족 초청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경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가족 초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초청자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정부의 사회 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864 작성시 초청자의 소득을 이용한다면 소득액이 최소한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 생계비의 125%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이동찬

이민 변호사

비의 125%가 되는 금액과 초청자의 소득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의 5배 이상 가지고 있어야 재정보증의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다.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충분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니라도 재정 보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초청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외 국가 체류시 초청자가 I-864작성을 할 자격이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외 국가 체류시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영주권자는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는 미국외 국가 체류시 해외체류가 단기간이며 미국에서의 부재중 기간에도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초청에 필요한 재정보증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 생계비 지표에서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00%의 금액은 매년 \$15,130이며 125%의 금액은 \$18,912이다.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25%의 금액은 매년 \$28,812이다. 만약 초청자가 혼자 미군복무자라면 본인의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00%와 동일한 것으로 증명하면 된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가 되지 않는다면 초청자의 자산을 사용해도 된다.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최저생계비의 125% 되는 금액과 초청자의 소득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의 3배 이상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재정보증의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가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초청자는 최저생계

만약 초청자가 가족초청시 요구되는 소득 또는 자산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 수혜자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영주권 수혜자가 초청자의 배우자이거나 초청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전에는 동거 기간이 최소 6개월이어야 했으나 지금은 상관이 없다.

둘째, 영주권 수혜자의 소득이 이민법상 미국 내 합법적인 고용을 통해 취득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서 취득한 소득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막연한 미국 내 취업 가망성은 재정 보증 증명에서 제외된다. 만약 영주권 수혜자의 소득이 부족하다면 초청자처럼 자산을 이용하여 재정보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초청자와 그의 가족이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재정보증

증명해야만 I-864작성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초청자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 해도, 영주권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시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함을 국무부, 이민국, 또는 이민 판사에게 증명한다면 I-864의 작성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초청자가 본인의 미국 거주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주권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것이다.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서 가족초청 케이스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미국 이민법을 잘 이용한다면 보다 쉬운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케이스 별로 추가 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있기 마련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213)291-9980